



2022. 9. 7.(수) 09:00
북천면사무소

이장협의회 회의자료

북 천 면

목 차

○ 인사발령 안내	1
○ 담당마을 편성현황	1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요청	2
○ 추석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2
○ 추석 연휴기간 북천면 복지 목욕탕 운영 안내	3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및 암검진 홍보 협조	3
○ 2022년 추석 연휴 진료 일정 홍보	4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안내	5
○ 제16회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 개최	5
○ 농어촌공사 농지정책사업 홍보	6
○ 22년 9월 정기분 토지세 납기내 납부독려 홍보	6
○ [붙임 1] ~ [붙임 4]	8

이장협의회 회의자료

22. 9. 7.(월)

총무부서

I 인사발령 안내

정보영
(880-6333)

- 발령일자 : 2022. 9. 6.일자
- 발령사항

구 분	직 급	성 명	전보사항	
			이전부서	발령부서
전입	행정6급	강순정	양보면 부면장	북천면 부면장
	행정7급	김진주	행정과	북천면 산업경제
전출	행정6급	박다영	북천면 부면장	주민행복과

II 담당마을 편성현황

정보영
(880-6333)

마을명	직 급	성 명
방 화	행정 7급	김진주
금 촌	시설 6급	심일수
가 평		
사 평	복지 8급	하다솜
모 성		
직 전	통신 6급	김옥진
이 명	시설 9급	손현서
계 산		
신 촌	행정 9급	강민지
빙 옥		
남 포	행정 8급	정보영
서 황		
중 촌	농업 6급	정광임
기 봉		
화 정	행정 8급	이영록
상 촌		

III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요청

정보영
(880-6333)

○ 품목별 쓰레기 배출요일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생활폐기물		○		○			○
음식물쓰레기		○		○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				

- 품목별 수거요일

- 1) 재활용품 : 목(배출일: 수)
- 2)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월, 수, 금.(배출일: 일, 화, 목)
- 3) 대형폐기물 : 화, 목(배출일: 월, 수)

○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구분	배출요령	비고
일반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는 쓰레기(가연성) : 노란색봉투 사용·배출 ■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 흰색봉투 사용·배출 	
음식물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봉투 사용·배출 	
대형생활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무소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구입·부착 후 배출 	(장롱, 소파, 침대, 책상, 식탁 등)
폐가전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1599-0903 예약 후 배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데스크탑 PC 등)
영농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별 수집 후 위탁업체 수거 의뢰 (※ 위탁업체 : 경남자원 ☎ 055-882-8306) * 개인별, 소량 수거 불가 	(폐비닐, 농약빈병 등)
재활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 제거 후 종류별로 배출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캔류, 폐필름류포장재 등

IV 추석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정보영
(880-6333)

○ 추석연휴 생활쓰레기 수거 계획

구분	9. 9(금)		9. 10(토)		9. 11(일)		9. 12(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북천면	○	○					○	○

○ 협조사항

- 생활쓰레기 수거 전일 저녁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 9. 8(목) / 9. 11(일) / 9. 12.(월) 생활쓰레기 배출

I 추석 연휴기간 북천면 복지 목욕탕 운영 안내

정광임
(880-6357)

○ 추석 연휴기간 운영안내

- 운영시간 : 오전 6시 ~ 10시, 오후 4시 ~ 7시
- 추석당일 : 오전 6시 ~ 9시까지 운영
- 휴 무 : 매주 월요일

구 분	9.9.(금)	9.10.(토) - 추석	9.11.(일)	9.12.(월)
운영시간	오전 6시 ~ 10시 오후 4시 ~ 7시	오전 6시 ~ 9시	오전 6시 ~ 10시 오후 4시 ~ 7시	휴 무

II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및 암검진 홍보 협조

정광임
(880-6357)

- 2022년도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수검율 매우 저조
- 마을방송안 참고 홍보 협조

< 방 송 문 안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아직까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필히 건강검진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장암검진은, 50세 이상 1년에 한번 검진 대상자이며, 분변통은 면사무소 또는 근처 농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병원이 복잡하여 원하는 때에 수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신 중이더라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회 방송)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구분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진료 계획 (2022)			
				9. 9.(금)	9. 10.(토)	9. 11.(일)	9. 12.(월)
의원	하동읍	하동중앙의원	883-0222	24시간 진료	24시간 진료	24시간 진료	24시간 진료
	하동읍	하동군민여성의원	882-7770	응급분만	응급분만	응급분만	응급분만
	하동읍	하동중앙치과의원	883-9800	09:00-12:00	휴무	휴무	휴무
	화개면	보덕의원	884-0008	09:00-12:30	휴무	휴무	휴무
	화개면	화타한의원	884-7112	09:00-12:00	휴무	09:00-12:00	09:00-12:00
	진교면	백의원	884-2115	08:00-12:00	휴무	휴무	휴무
	진교면	두레원의원	882-6077	휴무	08:00-12:00	휴무	휴무
	옥종면	세종의원	883-6175	08:00-12: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하동읍	오약국	884-4315	09:00-19:00	휴무	휴무	휴무
	하동읍	서울미보약국	884-2888	휴무	휴무	09:00-17:00	09:00-17:00
	하동읍	심진강약국	884-1655	09:00-15:00	휴무	휴무	휴무
	하동읍	메디팜행복약국	882-1253	휴무	09:00-18:00	휴무	휴무
	화개면	화개약국	883-3232	08:50-12:30	휴무	휴무	휴무
	금남면	명성약국	882-0124	09:00-13:00	휴무	휴무	09:00-13:00
	진교면	새진교약국	884-8042	휴무	09:00-14:00	휴무	휴무
	진교면	시장약국	882-8883	09:00-13:00	휴무	휴무	09:00-13:00
	진교면	건강당약국	882-3523	휴무	09:00-13:00	09:00-13:00	09:00-13:00
	옥종면	박약국	882-8033	08:00-12:00	휴무	09:00-12:00	09:00-12:00
옥종면	옥산약국	884-6677	09:00-15:00	휴무	09:00-15:00	09:00-17:00	
보건 기관	하동읍	보건소	882-4000	휴무	09:00-18:00	휴무	휴무
	적량면	우계보건진료소	880-6753	휴무	09:00-12:00	휴무	휴무
	화개면	범왕보건진료소	880-6750	휴무	09:00-12:00	휴무	휴무
	화개면	부덕보건진료소	880-6751	휴무	휴무	09:00-18:00	휴무
	약양면	동매보건진료소	880-6752	09:00-18:00	휴무	휴무	휴무
	횡천면	전대보건진료소	880-6756	09:00-12:00	휴무	휴무	휴무
	횡천면	남산보건진료소	880-6755	휴무	09:00-18:00	휴무	휴무
	청암면	목계보건진료소	880-6765	휴무	휴무	휴무	09:00-18:00
	고전면	성천보건진료소	880-6758	09:00-18:00	휴무	휴무	휴무
	고전면	고하보건진료소	880-6757	휴무	13:00-18:00	휴무	휴무
	양보면	우복보건진료소	880-6762	13:00-18:00	휴무	휴무	휴무
	금남면	중평보건진료소	880-6760	휴무	휴무	13:00-18:00	휴무
	금남면	덕천보건진료소	880-6759	휴무	09:00-12:00	휴무	휴무
	진교면	감정보건진료소	880-6761	휴무	휴무	09:00-12:00	휴무
	북천면	화정보건진료소	880-6763	휴무	휴무	휴무	09:00-12:00
	북천면	방화보건진료소	880-6764	휴무	휴무	휴무	13:00-18:00
	옥종면	위태보건진료소	880-6766	09:00-18:00	휴무	휴무	휴무
옥종면	북방보건진료소	880-6767	휴무	13:00-18:00	휴무	휴무	

※ 추석 연휴에는 정상근무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한 근무임으로 상기 의료기관 및 약국에 근무시간을 전화로 확인 후 진료 받으시기 바라며,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I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안내**

심일수
(880-6342)

-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 ~ 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임야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산림청 공고) : 별첨

[붙임 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문(산림청 공고) p8

II **제16회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 개최**

심일수
(880-6342)

- 기 간 : 2022. 9. 17.(토) ~ 2022. 10. 3.(월)
- 주최·주관 :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용수)
- 주 요 내 용
 - 개막식 : 9. 17.(토) 11:00. *10:00~ 식전행사
 - 식당부스 운영, 잡화부스 운영, 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
- 입장료 징수 : 1,000원(축제장 전체 구간)

- 경영회생지원사업
 - 내 용 :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회생을 지원
 - 지원대상 : 만 75세(1946년생)이하 부채 4천만원 이상 또는 농업재해로 연간피해율이 50% 이상
- 농지매입자금 지원
 - 내 용 : 농업인이 농지 매수 시 농지매수자금 연리 1% 융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논, 밭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이 자 : 원금분할상환, 연리 1%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내 용 :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창업농·2030세대 등 농업인에게 임대
 - 매입대상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농업인 또는 상속 및 8년 경영 후 이농한 비농업인
- 과원매매사업
 - 내 용 : 비농가·전업·은퇴를 위해 과원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과원을 매입하여 과수농가에게 매도

[붙임 2] 농어촌공사 농지정책사업 안내문 p17

민원부서

- 납세의무자 : 2022. 6. 1.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월 부과
- 납부기간 : 2022. 9. 30.(금)까지
- 고지서발송 : 2022. 9. 8(목) →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일괄 발송 예정

○ 부과현황

(단위 : 건/원)

구 분	부 과 건 수	부 과 금 액	비고
북천면	2,384	102,444,780	

○ 협조사항

- 납부기간 《'22. 9. 30.(금)까지》 내 마을주민 및 관외 거주 토지주 납부독려 및 안내
- 고지서 미 수령 납세자 면 민원부서 방문 고지서 재발급 납부 안내
- 자세한 사항 면 민원부서 전화(☎055-880-6352, 6353) 또는 방문 문의

[붙임 3] 마을별 토지세 부과현황 p18

[붙임 4] 마을방송(안) p19

※ 납세자 및 체납자명부에 의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청 공고 제2022-294호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 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산림청장

※ 현재「임업직불제법」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심사 및 제정 결과에 따라 일부 대상,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① 국유림 및 공유림
- ②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 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③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④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 ⑤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⑥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⑦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⑧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⑨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립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p>*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②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③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연도)과 합하여 30ha까지 지급 ④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⑤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②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3.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

- (중사 요건) ①0.1ha 이상 대상 산지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자 격 요 건 항 목	자 격 기 준
①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⑤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⑧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 예외적으로 「임업직불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 항목 중 ②~⑧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① 항목의 면적이 초과될 경우, 면적 직불금의 지급액의 합계가 소규모임가 직불금으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규모임가직불금 선택 가능

나.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종사 요건) ①0.1ha 이상 대상 산지(법인 5ha 이상)에서 ②직전 1년 이상 (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인 자
-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임산물생산업 주업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	농업법인
① 동일·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① 동일·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②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② 판매액 8,000만원 이상
③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③ 경영투입비용 4,000만원 이상

라. 육림업직불금

- (종사 요건) ①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내 본인의 조림,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를 말한다)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②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연간 90일 이상)한 자
-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육림업 주업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	농업법인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② 다음 요건은 모두 만족 ㉠ 주된 산지에서 100ha이상 경영 ㉡ 해당 산지에서의 종사일수 90일 이상 ㉢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4. 지급면적 및 단가(안)

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당 120만원

나.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 30ha(임가당 60ha), 농업법인 50ha까지 지급 상한

다. 육림업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임가당 60ha), 농업법인 50ha까지 지급 상한

*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 지급 단가는 추후 별도 고시 예정

5. 신청 관련 사항

- 임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를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필수	▶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필수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구 분	제출서류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림업) '2012.1.1.~등록 신청일 이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 증명 서류 1) 직접 실행 : (숙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설계도서·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단, 산림경영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2) 지자체 보조사업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 서류 * 산림 부서를 통하여 육림 실적 확인이 가능할 경우, 확인으로 대체 가능
3. 농업 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따른 2021년도분 <u>소득금액증명원</u>
4.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임차임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지에 한하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공익직불 신청인과 산지의 소유자·임차인이 다른 경우 ▶ (사유지) (사인간) <u>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u>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u>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u> ▶ (중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중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u>회의록</u>
5.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지에 한하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u>가족관계증명서</u> ▶ 임가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u>임대장</u> ▶ 임가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임가 구성원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따른 2021년도분 <u>소득금액증명원</u>
6.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및 종사일수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 출하 납품 시 : <u>영수증, 납품확인서</u> 등 2) 직거래 시 : (<u>계좌이체</u>)<u>입금내역, 거래내역서/(카드거래) 카드결제영수증,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 시 택배영수증)</u> ▶ (공통) 연간 종사일수 1) 종사 증명 : <u>영림자재 구매, 교육이수, 기반시설 지원이력 등 증명</u> ▶ (공통) 산지 소재지의 이(통)장 등 확인·발급한 “<u>경작·경영사실확인서</u>”
7. 농촌(산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주업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지에 한하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경영면적 : 시스템 확인</u>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 출하 납품 시 : <u>영수증, 납품확인서</u> 등 2) 직거래 시 : (<u>계좌이체</u>)<u>입금내역, 거래내역서/(카드거래) 카드결제영수증,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 시 택배영수증)</u> ▶ <u>연간 경영투입비용</u> 1) 농자재 및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증빙 서류 2)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간이 임업용 시설, 임산물 간이 처리시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 계약, 대금지급 등 증빙 서류 ▶ <u>연간 종사일수</u> 1) 종사 증명 : <u>영림자재 구매, 교육이수, 기반시설 지원이력 등 증명</u> ▶ <u>목재판매액</u> 1) 계약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품목, 거래자 인적 첨부) 등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10.14일까지 보완

6. 유의 사항

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0.14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에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 「임업- i n 」 (www.foco.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매수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매수자금을 연리 1%로 융자해 드립니다.

1. 사업내용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된 논, 발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지원내용	논·밭 39,669원/3.3m ² (초과금은 자부담) - 생애첫농지취득 : 50,975원/3.3m ²
유의사항	지원농지가 논인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간 타작물 재배 - 타작물 재배기간(2년) 동안은 지원금 이자 전액 감면 혜택 - 연결된 필지를 매입하여 경영면적을 규모화하는 경우 해당 의무 없음
상환기간	11~30년 (75세 - 지원당시 연령)
이 자	원금분할상환, 연리 1%

2. 지원대상자

전업농 육성대상자	가) 청년창업협 후계농업경영인 나) 2030세대 다) 후계농업경영인 라) 귀농인 마) 일반농업인
전업농업인	○ 경영규모 6ha 이상인 만 64세 이하 ○ 농업경영체 등록한자 * 조건 모두 충족

3. 지원면적

전업농 육성대상자	○ 진입단계 : 경영규모 2ha까지 지원 ○ 성장단계 : 경영규모 6ha까지 지원
전업농업인	○ 경영규모 10ha까지 지원 * 농지매매는 소유규모 3ha까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1577-7770)

북천면 마을별 토지세 부과 현황

(기준일 : 9. 4 현재)

마을명	건수(건)	금액(원)
계	2,384	102,444,780
방화	47	2,207,250
금촌	28	1,338,990
가평	28	930,180
사평	52	2,183,920
모성	38	2,955,610
직전	67	2,938,900
이명	42	2,862,080
계산	19	1,340,260
신촌	43	2,568,230
빙옥	46	1,744,010
남포	50	2,528,720
서황	29	845,160
중촌	35	2,041,010
기봉	30	1,955,530
화정	57	5,969,350
상촌	69	2,401,260
관내(무통)	42	4,930,450
관외	1,662	60,703,870

주민세(개인분, 사업소) 납부독려 마을 방송안

“ 방 송 안 ”

00마을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은 2022년 정기분 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하동군에서 기 발송된 고지를 가지고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고,

혹시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분실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복천면 민원실로 방문 하시어 재발급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인은 통장에 잔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반복2회)